

제 5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1 절 무역원활화

제 5.1 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 장은, 양 당사국의 각각의 국제적 의무와 국내 관세법에 따라, 양 당사국 사이에 교역되는 상품 및 양 당사국간 운송수단의 이동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양 당사국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 나. 양 당사국의 행정 절차를 포함한 관세법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의 보장
 - 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품의 반출 및 운송수단의 이동 보장
 - 라. 양 당사국간 무역의 원활화, 그리고
 - 마. 이 장의 적용범위에서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 증진

제 5.2 조 권한있는 당국

1. 이 장의 운영을 위한 권한있는 당국이란,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말한다.

2. 각 권한있는 당국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하나 이상의 접촉 부서를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러한 접촉 부서의 상세 연락처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접촉 부서의 상세 연락처의 변경을 신속히 서로 통지한다.

제 5.3 조 원활화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통관 절차와 관행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으며, 투명하고, 무역을 원활하게 할 것을 보장한다.

2. 가능한 경우 그리고 각각의 관세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의 통관 절차는 당사국이 그 당사국인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의 무역 관련 합의문서에 부합한다. 이 합의문서에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 협약)(개정판)*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개정 교토 협약)*의 것들도 포함된다.

3. 각 당사국은 최소한의 서류 요건으로 상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통관 사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4.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통관 절차를 운용함에 있어 상품의 반출을 포함하여 통관을 원활하게 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무역업자들이 이를 통해 상품의 반출을 포함하여 통관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규제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다른 방식의 단일창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5.4 조 관세평가

양 당사국은 당사국간 교역되는 상품에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한다.

제 5.5 조 품목분류

양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당사국간 교역되는 상품에 적용한다.

제 5.6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대우를 포함하여 통관 사안과 그 밖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결정¹⁾에 대해,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련인²⁾이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단계,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2. 검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행정적 검토를 수행하는 당사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당사국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

1) 이 조의 목적상, 페루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이 인에게는 재심 또는 불복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필요한 것으로 양해된다.

다. 이 정보는 양 당사국에 의해 결정된 규칙에 따라 제공된다.

제 5.7 조 사전심사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사안에 대한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

가. 품목 분류

나. 원산지 규정의 실행,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2. 이러한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을 위한 절차는 적어도 다음을 포함한다.

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최대 120일의 기간 또는 당사국이 설정한 더 짧은 발급 기간

나. 사전심사결정서의 확인, 취소 및 공표를 위한 조건, 그리고

다. 제재 조치

3.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그 관세행정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특히 품목 분류 및 원산지 규정 등의 통관 사안에 대한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

4. 특히 기한 등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 사용, 취소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각 당사국의 법령에 규정된다.

5. 페루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2012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이행한다.

제 5.8 조

종이없는 무역 환경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1. 관세행정기관은 WCO 내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진전을 고려하여, 특히 종이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비용 효과가 높고 효율적인 경우, 통관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2. 관세행정기관은 위험관리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적의 도착 전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하여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3. 상품이 단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양 당사국의 통관 영역에 들어오거나 그로부터 나갈 때에는, 양 당사국은 관련된 국내 당국이 그 상품을 단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동시에 검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5.9 조

위험관리

1. 각 관세행정기관은 통관 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고위험 상품 선적에 대한 검사 활동에 집중하고 반출을 포함하여 저위험 상품의 통관을 촉진한다. 추가적으로 관세행정기관은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하면서 위험관리 응용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급망을 통해 국제기준을 따르고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무역을 증진하는 사업자에게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공한 인증을 상호 인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완전히 이행한다.

제 5.10 조 공표 및 문의처

1. 각 관세행정기관은 자신이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법 및 행정 절차를 공표한다.

2.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통관 사안에 대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문의를 다루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고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에 그러한 문의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그러한 문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정보는 대중에 공개된다.

3.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관장하는 그 관세법 또는 절차를 현저하게 수정하는 경우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에게 적절한 시간 내에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제 5.11 조 특송 화물

각 관세행정기관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도 특송 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는 그 무게 또는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필요한 통관 문서가 제출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제공한다.

제 5.12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그 관세행정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 관세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길지 않은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상품의 도착 이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도착 즉시 상품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실제 도착 이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착 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자국 관세행정기관이 적용하는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하도록 허용하는 절차

3.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관세, 세금 및 수수료의 최종 지불액을 포괄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보증금,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통관 협력

제 5.13 조 통관 협력

1. 양 당사국은 통관 및 통관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품의 적법한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이 협정에 따라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특히 관세 법령에 위반되는 작업의 방지, 적발 및 조사에 의해 그 법령이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 권한 내의 분야에서 이 장에 규정된 방식 및 조건에 따라 서로 지원한다.

4.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가. 양국간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 수출 및 상품의 통과에 대한 관세 관련 사안에 있어서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및 자료 요소의 국제기준에 따른 조화를 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의 관세 분석소 및 과학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관세 분석 기법을 조화하도록 노력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의 통관 전문가를 교환하는 것

라. 통관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을 위해 통관 관련 문제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

마. 무역업계 및 재계와의 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

바. 가능한 범위에서, 수입된 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품목 분류, 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있어,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를 포함한 그 밖의 통관 사안에 있어 서로 지원하는 것

사.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 및 그 밖의 통관 절차 그리고 특히 위조 상품에 대해서 관세당국에 의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집행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아.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수입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서 환적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를 통과하는,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해상 컨테이너 및 그 밖의 선적의 교역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을 개선하는 것. 양 당사국은 강화되고 확장된 협력의 목적이 다

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 1) 국제무역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통관 관련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 그리고
- 2) 가능한 범위에서, 컨테이너 안정성 관련 문제가 적절히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다자 협의체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

제 5.14 조

통관 협력의 이행

1. 이 절의 이행은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위임된다. 관세행정기관은 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현행 규칙을 고려하여 이 절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 및 방안에 대해 결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채택된 세부적 이행 규칙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

3. 양 당사국은 정보 교환을 위한 접촉 부서를 교환한다.

제 5.15 조

통관사안에 대한 상호 행정지원

1.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당국은 비특혜 원산지, 품목 분류, 평가, 원산지 결정 및 관세 법령 위반 또는 위반일 수 있는 인지되거나 계획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세 법령 준수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2.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당국은, 적절한 경우 상품에 적용된 통관 절차를 구체화하여,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적절히 수입되었는지를 통지한다.

3.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당국은 자국법의 범위에서 다음에 대한 특별한 감독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관세 법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나. 관세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이용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근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품이 보관되는 장소

다. 관세 법령의 실질적 위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된 상품의 이동, 그리고

라. 관세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

4. 당사국이 특히 다음의 정보를 획득한 경우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도적으로 자국 법, 규정 및 그 밖의 법적 수단에 따라 지원을 서로 제공한다.

가. 그러한 법령의 위반이거나 위반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와 관련된 행위

나. 그러한 행위의 수행에 있어 사용되는 새로운 수단 또는 방법

다. 관세 법령의 실질적 위반인 것으로 알려진 상품

라. 관세 법령을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마. 관세 법령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

제 5.16 조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장에 따른 지원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서면 요청에는 요청 준수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가 수반된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 구두 요청도 인정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이 장에 따른 지원의 요청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다.

가. 신청 당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목적 및 이유

라. 관련된 법 또는 규정 조항 및 그 밖의 법적 요소

마. 조사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적시, 그리고

바. 관련 사실 및 이미 실시된 질의의 요약

3. 요청은 영어로 제출된다. 요청서가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요청받은 당국은 신청 당국에 대해 문서의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요청이 위에서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정이나 완성이 요구될 수 있다.

제 5.17 조

요청의 실행

1. 지원 요청에 따르기 위해, 요청받은 당국은 그 권한 및 가용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거나 그 동일한 당사국의 그 밖의 기관의 요청에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보유한 정보의 제공, 적절한 질의의 실시, 또는 그러한 실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이 항은 요청받은 당국 스스로가 실행할 수 없어 그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모든 당국에도 적용된다.

2. 지원 요청은 요청받은 당사국의 법규 조항에 따라 실행되며, 답변은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늦어도 120일 이내에 송부된다.

3.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어느 한 쪽 공무원은 신청 당국이 이 장의 목적상 필요로 하고 관세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거나 행위일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당국 또는 그 밖의 관계 당국의 사무소에 있을 수 있다.

4.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당사국의 공무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조사 또는 검증에 참석할 수 있다.

제 5.18 조

지원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지원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그러한 지원이 주권, 공공정책, 안전 또는 그 밖의 핵심적인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나. 그러한 지원이 관세 법령 외의 통화 또는 조세 규정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 다. 그러한 지원이 산업적, 상업적 또는 직업적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2. 요청 받았다면 신청 당국 자신도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신청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 당국은 그 요청에서 그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요청받은 당국이 결정한다.

3. 지원이 거절된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대한 이유가 지체 없이 신청 당국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 5.19 조

비밀유지

1. 이 장에 따라 전달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는 비밀 또는 접근제한 정보로 취급된다. 그 정보는 공식적인 비밀 의무의 적용을 받으며,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의 관련법상 유사한 정보에 제공되는 보호를 향유한다.

2. 식별되어 있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즉 신원자료는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이 그러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에서 그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 것과 적어도 동등한 방식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제 5.20 조

정보의 이용

1. 획득된 정보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를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한다.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이후 그 당국이 정한 제한에 따른다. 불법 마약 거래와 관련된 정보는 그 밖의 당국에 통지될 수 있다.

2. 제1항은 관세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규정된 모든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 정보를 제공한 관세행정기관은 그러한 정보의 사용에 대해 지체 없이 통지를 받는다.

3. 양 당사국은 그 증거, 보고 및 증언의 기록과 사법절차에서 이 장에

따라 획득한 정보 및 협의 문서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제 5.21 조 **전문가 및 증인**

요청받은 당국의 공무원은 이 장의 적용 대상인 사안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부여받은 권한 범위에서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서 출두하도록 승인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물, 문서 또는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출두 요청서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그리고 어떠한 직함 또는 자격으로 그 공무원이 질의 받게 될 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제 5.22 조 **지원 비용**

적절한 경우, 전문가 및 증인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통역가 및 번역가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배상에 대한 모든 상호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 5.23 조 **통관 절차의 검토**

1. 각 관세행정기관은 통관 절차의 추가적 간소화 및 양 당사국간의 무역 원활화를 위한 상호 호혜적 약정의 개발을 위해 그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2. 통관 통제에 대한 위험관리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각 관세행정기관은 자신의 시스템의 성능,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제 5.24 조

협 의

1. 제5.25조를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은 품목 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에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협의는 관련 접촉 부서를 통해 수행되며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5.25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무역원활화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제 5.25 조

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올바른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할 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권한있는 당국 및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무역원활화 및 통관 사안을 책임지는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관련 당국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효과적, 통일적, 일관적 운영을 보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을 제고한다.

나. HS가 변경되는 것에 근거하여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를 유지한다.

다.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 1)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
- 2)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품목 분류 및 관세평가
- 3)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그리고
- 4) 양 당사국간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관행의 당사국에 의한 채택

라. 국제 표준에 따라 양 당사국간 상업적 교류를 촉진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을 채택한다.

마. 품목 분류를 포함하여 이 장의 해석, 적용 및 운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 위원회가 품목 분류에 대한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WCO에서 적절한 협의를 개최하고 그의 권고를 추구한다. WCO의 그러한 권고는 양 당사국에 의해 적용된다.

바. 양 당사국간 총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동위원회에 제4.12조(수정)에 따른 수정 제안의 승인을 제안한다.

사. 전자 인증 및 검증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아. 제2.17조(상품무역위원회)에 따라 설립된 상품무역위원회의 적용 대상이 아닌 그 밖의 원산지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

4. 위원회는 공동 목표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에 구성된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의,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제 3 절
정의

제 5.26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신청 당국이란 당사국에 의해 요청을 하도록 지정된 권한있는 행정 당국을 말한다.

관세 법령의 위반이란 그 법령의 모든 위반 또는 위반의 시도를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란,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국립 조세행정 감독원 또는 그 승계기관을 말한다.

관세법이란 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의해 시행, 적용 또는 집행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

관세 법령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 그리고 금지, 제한 및 통제 조치를 포함하여 그 상품을 통관 절차의 적용을 받도록 규율하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의해 채택된 모든 법규 조항을 말한다.

통관 절차란 각 관세행정기관이 통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 수단에 적용하는 처리를 말한다.

상품이란 HS의 제1류에서 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운송수단이란 인, 상품 또는 물품을 운송하여 영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항공기 및 짐 싣는 동물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받은 당국이란 당사국에 의해 요청을 받도록 지정된 권한있는 행정 당국을 말한다.